

공학융합연구원 규정

2012. 2. 29. 제정

2025. 12. 23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공학융합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제 2 조 (사업) 연구원은 여성 공과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선도적 융합 연구 분야를 창출하고 공과대학 내 우수한 연구진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,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기관으로 도약하고 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1. 공학 분야의 학제간 융합 연구
2. 본교 내 타 연구소(센터)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 연구
3. 공학 융합분야의 학제적 교육 및 훈련과정 운영
4.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교류
5. 국내외 학·연·산 협력 연구 및 기술 개발
6. 기타

제 3 조 (원장·부원장)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다.

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(개정 2025.12.23.)

제 4 조 (조직) ① 연구원에 환경문제연구소, 융합전자기술연구소,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,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,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,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(이하 “산하 연구소”라 한다)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25.12.23.)

② 산하 연구소별 연구사업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각 연구소는 해당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·연구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1. 환경문제연구소 : 공해를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 연구 및 자연 및 환경의 보호·보존
2. 융합전자기술연구소 : 융합전자기술 관련 분야의 발전
3.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: 미생물자원의 개발 및 응용, 생촉매 시스템 개발, 나노바이오 융합 연구와 관련 교육
4.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: 건축도시시스템공학 분야의 핵심 융합기술 연구개발
5.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: 화학공학, 신소재공학, 환경공학, 식품공학, 화학 분야의 핵심 융합기술 연구개발
6.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: 기계공학, 의생명공학, 데이터공학 분야의 핵심 융합기술

연구개발

③ 행정실은 연구원의 사무 회계와 산하 연구소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제 5 조 (소장, 부소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산하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, 필요한 경우 부소장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5.12.23.)

② 소장과 부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③ 산하 연구소의 각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원과 산하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5.12.23.)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0.12.10., 2025.12.23.)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 연구원과 산하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5.12.23.)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25.12.23.)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중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산하 연구소의 경우 각 연구소 소장이 임면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행정인력) ①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하며,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② 산하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각 연구소 소장이 임면하며, 행정인력의 보수는 각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 (신설 2025.12.23.)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융합연구원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, 부원장, 산하 연구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③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원과 산하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12.23.)
2. 연구원과 산하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12.23.)
3.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12.23.)
4. 연구원과 산하 연구소의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12.23.)
5. 기타 연구원과 산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(개정 2025.12.23.)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1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원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이 관리한다. (개정 2018.6.20., 2025.12.23.)

부 칙 (2012. 2. 29. 제정)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2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2. 10. 개정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1. 환경문제연구소 규정
2.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
3. 미생물바이오시스템공학연구소 규정
4. 건축도시융합기술연구소 규정

5. 화공신소재공학 연구소 규정
6.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 규정